

『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』 중도금 대출신청 안내문

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분양세대의 중도금 대출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
계약자분들께서는 필요서류 지참 후 해당 일정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 중도금대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신청장소	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견본주택 [주소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26]
일 시	2025년 6월 24일(화) 오전 10시 ~ 오후 4시
대상세대	수분양자로서 아파트 공급금액의 5%이상 계약금으로 납입한 자 - 중도금 대출신청일(25.6.24) 이전까지 계약금2차 약정금을 납부완료하여야 합니다. - 중도금대출은 중도금(1차~6차) 전 회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금융기관	전북은행 중부종합금융센터
준비서류	별도 첨부된 안내문(본 안내문 뒷페이지) 및 ‘트루엘시그니처천안역’ 홈페이지(팝업창) 확인 * 대리인 신청불가

※ 유의사항

- ▶ 상기 지정된 신청일자에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.
- ▶ 계약자 본인이 중도금대출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- ▶ 공동명의 계약자는 각각의 서류를 지참하여 명의자 모두 방문하여야 합니다.
- ▶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의 준비서류 및 방문전 필수사항을 확인하신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문의 사항

- ☎ 견본주택 : 1533-1110
- ☎ 전북은행 중부종합금융센터 : 042-824-9521(내선 121,131,132).

시행위탁자 (주)두원파트너스 시공사 일성건설(주)

TRUEL

아파트 중도금대출

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
중도금 대출

대 출 대 상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공동주택 수분양자 중 계약금 10% 이내 납부한 계약자 ※ 대리인 신청불가
대 출 한 도 분양금액의 60% 이내

제 시 금 리
(2025.06.10
기준)

기준금리	연 2.70% (연합회신규 COFIX 6개월 변동)
가산금리	연 2.20%
제시금리	연 4.90% *산출방식 : 기준금리(연합회신규 COFIX기준금리, 6개월 변동) + 가산금리 *금리확정은 대출취급시점에서 시장기준금리 변경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최종결정

신 청 기 간 2025. 06. 24(화) [오전 10:00 ~ 오후 04:00]

신 청 장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26번지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건본주택

대 출 이 자 매월 이자일에 후취 (이자 후불제(분양계약서 제6조 참조 : 사업주체 ㈜두원파트너스 정책에 따름))
※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는 계약자가 은행에 직접 납부(납부일, 금액 등은 향후 은행에서 직접 안내 예정)

보 증 료
인 지 세
중도상환수수료

보 증 료	채우자 (분양계약자) 부담 - 주택도시보증공사 100% 보증서 발급			
인지세	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75,000원 1013-01-5319856/㈜전북은행중부종합금융센터 ※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세 1/2은 고객 부담	동 / 호수 / 이름 순으로 기재	중도상환 수수료	없음

대 출 기 간 2027. 01. 31. (입주예정일 + 6개월) (단,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보증기일 이내)

상 환 방 법 만기일시 상환

준 비 서 류
[A+B]

공통서류 [A]	- 분양계약서 원본, 신분증(오바일신분증 불가) - 주민등록등본 1부(세대원포함) •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: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- 주민등록초본 각1부 (등본상의 세대원 전원의 각 1부/변경사항 포함) •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전원의 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인감증명서 1부(전자민원창구용 불가), 인감도장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[과거변동사항 전부 포함 / ☎1577-1000 건강보험관리공단] - 국세 납세증명서(증명서 유효기간 확인) - 지방세 납세증명서(증명서 유효기간 확인)	
	소득서류 [B] (택 1)	급여소득자 -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2024년도)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소득금액증명원(최근년도) 1부 주부 등 무직자 ① 사실증명원(소득사실 없음 증빙)-세무서 or 홈택스 ② 아래 서류 중(택 1) - 신용카드 / 체크카드 연말정산용 확인서(2024년도)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 / ☎1577-1000 건강보험관리공단) - 국민연금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 / ☎1355 국민연금공단)

꼭 이 사 항

유의사항

※ 공동명의의 진행시 : 계약자 모두 방문 / 공통서류[A] 공동명의인 모두 준비 / 소득서류[B] 자주 준비
※ 수분양자가 시행(공사) 및 협력업체 임직원 / 임직원의 피부양자인 경우 *자의분양에 관한 확인서(분양계약자 작성)와 근로자 지위에 의한 분양확인서(건설사 작성)을 제출받아 예외적으로 보증허용
※ 중도금(1차~6차) 전 회차 신청 원칙
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부 표시 및 중도금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준비

※ 방문전 필수사항 : ① 본인명의의 핸드폰에 타은행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록
② 전북은행 "쓱뱅크" APP 설치 후 로그인

※ 계약을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※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.
※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률(약정이자율+3%, 최고 연 15%)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기한이익상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담합 및 보충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담보물건,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, 담보불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법원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내창입니다.

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297번길 55, 7층

상담문의 전화 042) 824 - 9521 (내선 121, 131, 132)

팩스 042) 824 - 9527

담당: 부지점장 김문수, 차장 김수화, 차장 송동훈, 대리 박희원

[필수확인]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 및 필요서류

항 목 (중복합인안됨)	내 용	필요 서류
저소득 (40%할인)	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	•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(본리세대또는 미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. 근로소득원천징수 2. 소득금액증명원 3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4. 소득이없을경우 : 사실증명서(소득이없음을증명) (세무서 또는 홈택스)
다자녀 (40%할인)	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**민법상 미성년자녀 : 19세 이하	•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	• 장애인 증명서 (본인이 아닐 경우 등본에 세대원 등록되어있어야함)
고령자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. 직계존속 외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.	• 주민등록등본 (노인부양가구의 경우 1년이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함)
신혼부부 (40%할인)	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,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인 경우	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, 본인/배우자의 소득자료(대출실행일 기준)
다문화 (40%할인)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	• 기본증명서(해당하는 자 기준)
국가유공자 (40%할인)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, 5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• 국가유공자확인원 • 독립유공자확인원 •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• 518민주유공자확인원 • 특수임무유공자확인원 •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(본인이 아닐경우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함)
의사상자 (40%할인)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사자 증서, 의사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• 의사자 증서 • 의사자 유족증 • 의사상자 증서 (본인이 아닐경우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함)
한부모 (60%할인)	피보증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	• 한부모가족증명서 (구청, 동주민센터, 민원24(인터넷발급신청))
독거노인 (60%할인)	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	• 주민등록등본
모범납세자 (10%할인)	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%할인	•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이내, 1개월이내발급) - 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포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
전자계약 (3% 할인)	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	